

■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[별표 4]

행정박물 관리대상(제39조제1항 관련)

유 형	범 위
관인(官印)류	· 청인 및 직인
상징물 · 기념물	· 업무수행 결과물, 행사 및 사건의 상징 · 기념물 · 훈장 및 포장, 우표, 화폐, 기념품, 현판, 휘호, 도안류 등
사무집기류	대법원장, 대법관 등 주요 직위자가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던 사무집기류 등
기 타	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그 밖의 유형